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 유)

제 목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

1. 관련 :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-3541(2017.07.10.)

2.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총괄기관으로서 ?공익신고자 보호법?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?추진하고 있는바,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각 공익신고기관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

3. 최근 공익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피신고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신고자가 정신적?신체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4. ?공익신고자 보호법?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르면,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5. 따라서 각 공익신고기관의 사건 처리 담당자 및 관련자 등은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,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교육부장관



각실과, 소속기관, 고등교육기관전체, 공직유관단체, 국립초중고등학교

주무관	안병민	행정사무관	이흥복	민원조사 담당관	전결07/11 임용빈
-----	-----	-------	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수신	담당	김효관	팀장	실장
----	----	-----	----	----

시행 민원조사담당관-4705 (2017-07-11) 접수 법무감사팀-336 (2017.07.12.)
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/ www.moe.go.kr
 전화 044-203-6442 전송 044-203-6093 / abm1927@moe.go.kr / 공개